

202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1년 4월 4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11년 4월 4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7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상정(2011. 4. 13)
및 의결(2011. 4. 14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도시재생과장 양완식)

□ 제안이유

- 우리시 구시가지 지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2010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재정비 및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별 정비 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고
- 노후 불량한 기존 주거지 및 기능이 쇠퇴한 도심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적절한 밀도로 과밀해소 및 기반시설 확충, 도시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여
-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며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

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안)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
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함.

□ 주요내용

가. 정비(예정)구역(안) 현황 : 84개소

1) 2020 도시·주거환경정비(예정)구역(안)

○ 총괄표

구 분		소 계		주택재개발 사업		주택재건축 사업		도시환경 정비사업		주거환경 개선사업		
		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
총 계	개 소	76	84	51	60	5	6	19	18	1	-	
	면적(천㎡)	6,481	7,241	5,283	6,242	143	236	1,018	763	36	-	
정비 (예정) 구역	개 소	소 계	28	36	16	25	5	6	6	5	1	-
		원미구	13	18	9	15	2	1	2	2	-	-
		소사구	10	14	3	6	3	5	3	3	1	-
		오정구	5	4	4	4	-	-	1	-	-	-
	면적 (천㎡)	소 계	2,001	2,761	1,365	2,323	143	236	457	202	36	-
		원미구	842	1,475	703	1,362	43	17	97	97	-	-
		소사구	631	1,008	384	683	101	219	110	106	36	-
	오정구	528	278	278	278	-	-	251	-	-	-	
재정비 추진지구	개 소	소 계	48	48	35	35	-	-	13	13	-	-
		원미구	10	10	9	9	-	-	1	1	-	-
		소사구	25	25	14	14	-	-	11	11	-	-
		오정구	13	13	12	12	-	-	1	1	-	-
	면적 (천㎡)	소 계	4,480	4,480	3,919	3,919	-	-	561	561	-	-
		원미구	1,110	1,110	1,051	1,051	-	-	59	59	-	-
		소사구	1,960	1,960	1,551	1,551	-	-	408	408	-	-
	오정구	1,410	1,410	1,316	1,316	-	-	94	94	-	-	

○ 총괄조서

- 단계구분

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	5단계
2006년 이후	2008년 이후	2011년 이후	2013년 이후	2016년 이후

연 번	구 분	구 별	구 역 명	위 치	면 적	사 업 방 식	기 준 (상 한) 용 적 률 (%)	추 진 단 계	비 고
--------	--------	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	------------------	--------

연 번	구 분	구 별	구 역 명	위 치	면 적	사 업 방 식	기 준 (상 한) 용 적 률 (%)	추 진 단 계	비 고
부천시 - 36개소					2,761,455.0				
원미구 - 18개소					1,475,341.1				
1	기정	원미구	심곡1-1	심곡동437-3번지일원	105,946.0	주택재개발	210(245)	2단계	상한용적률 폐지
	변경	원미구	심곡1-1	심곡동437-3번지일원	105,946.0	주택재개발	210	2단계	
2	기정	원미구	심곡1-3	심곡동325-32번지일 원	127,840.3	주택재개발	200(230)	2단계	상한용적률 폐지
	변경	원미구	심곡1-3	심곡동325-32번지일 원	127,840.3	주택재개발	200	2단계	
3	신규	원미구	심곡2-1	심곡동343번지일원	120,590.0	주택재개발	200	4단계	
4	기정	원미구	소사1-1	소사동483-6번지일원	25,907.0	주택재개발	315(395)	2단계	상한용적률 폐지
	변경	원미구	소사1-1	소사동483-6번지일원	25,907.0	주택재개발	315	2단계	
5	기정	원미구	소사상세계획3	소사동48-21번지일원	80,950.0	도시환경 정비	300이하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시 500이하 (공동주택300이하)	1단계	
6	기정	원미구	소사상세계획1	소사동42번지일원	15,724.4	도시환경 정비	300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시 500이하 (공동주택300이하)	1단계	
7	기정	원미구	역곡1-2	역곡동75-3번지일원	16,940.0	주택재건축	200(230)	1단계	상한용적률 폐지
	변경	원미구	역곡1-2	역곡동75-3번지일원	16,940.0	주택재건축	200	1단계	
8	기정	원미구	춘의1-1	춘의동127번지일원	106,151.6	주택재개발	204(234)	2단계	상한용적률 폐지
	변경	원미구	춘의1-1	춘의동127번지일원	106,151.6	주택재개발	204	2단계	
9	기정	원미구	도당1-1	도당동266-4번지일원	138,154.2	주택재개발	200(230)	1단계	상한용적률 폐지
	변경	원미구	도당1-1	도당동266-4번지일원	138,154.2	주택재개발	200	1단계	
10	기정	원미구	약대동1	약대동144번지일원	41,822.2	주택재개발	250	1단계	
11	기정	원미구	약대동2	약대동154번지일원	71,317.9	주택재개발	250	1단계	
12	기정	원미구	중동1-1	중동980번지일원	16,142.6	주택재개발	200(230)	1단계	상한용적률 폐지
	변경	원미구	중동1-1	중동980번지일원	16,142.6	주택재개발	200	1단계	
13	기정	원미구	중동1-2	중동824번지일원	69,523.0	주택재개발	300(500)	2단계	특별계획구역 계획자침 반영시
14	신규	원미구	중동2-1	중동715-2번지일원	162,114.0	주택재개발	200	4단계	
15	신규	원미구	중동2-2	중동587번지일원	42,307.1	주택재개발	200	4단계	

연 번	구 분	구 별	구 역 명	위 치	면 적	사 업 방 식	기 준 (상 한) 용 적 률 (%)	추 진 단 계	비 고
5									
1 6	신규	원미구	중동2-3	중동793번지일원	72,935.2	주택재개발	200	3단계	
1 7	신규	원미구	상동2-1	상동238번지일원	205,748.6	주택재개발	200	4단계	
18	신규	원미구	상동2-2	상동326-4번지일원	55,227.0	주택재개발	300(500)	5단계	특별계획구역 계획자침 반영시
소사구 - 14개소					1,008,166.5				
1 9	기정	소사구	심곡본동	심곡본동530번지일원	41,078.5	주택재개발	250	2단계	
2 0	기정	소사구	심곡본1-1	심곡본동801번지일원	15,356.0	주택재건축	200(230)	2단계	상한용적률 폐지
	변경	소사구	심곡본1-1	심곡본동801번지일원	15,356.0	주택재건축	200	2단계	
2 1	신규	소사구	심곡본2-1	심곡본동615-1번지일 원	86,460.3	주택재개발	199	5단계	
2 2	신규	소사구	심곡본2-2	심곡본동566-1번지일 원	40,505.8	주택재건축	200	5단계	
2 3	기정	소사구	부천역1-1	심곡본동91-69번지일원	43,300.0	도시환경 정비	800(1000)	1단계	상한용적률 폐지
	변경	소사구	부천역1-1	심곡본동91-69번지일원	43,300.0	도시환경 정비	800	1단계	
2 4	기정	소사구	부천역1-2	심곡본동556번지일원	21,000.0	도시환경 정비	800(1000)	1단계	상한용적률 폐지 교통광장제척
	변경	소사구	부천역1-2	심곡본동556번지일원	16,841.0	도시환경 정비	800	1단계	
2 5	기정	소사구	소사본1-1	소사본동88-39번지일원	45,548.1	도시환경 정비	576(713)	1단계	상한용적률 폐지
	변경	소사구	소사본1-1	소사본동88-39번지일원	45,548.1	도시환경 정비	576	1단계	
2 6	기정	소사구	계수범박	계수·범박동 일원	302,397.0	주택재개발	200	1단계	
2 7	기정	소사구	괴안1-6	괴안동203-2번지일원	42,954.06	주택재건축	200(230)	2단계	상한용적률 폐지
	변경	소사구	괴안1-6	괴안동203-2번지일원	42,954.06	주택재건축	200	2단계	
2 8	기정	소사구	송내1-2	송내동427-32번지일원	40,431.4	주택재개발	244(305)	2단계	상한용적률 폐지
	변경	소사구	송내1-2	송내동427-32번지일원	40,431.4	주택재개발	244	2단계	
2 9	기정	소사구	송내1-1	송내동339번지일원	42,500.0	주택재건축	300(400)	2단계	상한용적률 폐지
	변경	소사구	송내1-1	송내동339번지일원	42,500.0	주택재건축	200	2단계	
3 0	신규	소사구	송내2-1	송내동589번지일원	107,345.9	주택재개발	204	5단계	
31	신규	소사구	송내2-2	송내동577번지일원	105,504.2	주택재개발	200	5단계	
3 2	신규	소사구	송내2-3	송내동441-8번지일원	77,944.2	주택재건축	200	5단계	
오정구 - 4개소					277,947.4				
3	기정	오정구	여월1-1	여월동10-11번지일원	45,053.4	주택재개발	180(200)	1단계	상한용적률

연번	구분	구별	구역명	위치	면적	사업방식	기준(상한) 용적률(%)	추진단계	비고
3	변경	오정구	여월1-1	여월동10-11번지일원	45,053.4	주택재개발	180	1단계	폐지
34	기정	오정구	삼정1-2	삼정동284번지일원	97,266.0	주택재개발	200(230)	2단계	상한용적률 폐지
	변경	오정구	삼정1-2	삼정동284번지일원	97,266.0	주택재개발	200	2단계	
35	기정	오정구	내동1-1	내동19-3번지일원	68,817.0	주택재개발	200(230)	1단계	상한용적률 폐지
	변경	오정구	내동1-1	내동19-3번지일원	68,817.0	주택재개발	200	1단계	
36	기정	오정구	내동1-2	내동36번지일원	66,811.0	주택재개발	200(230)	2단계	상한용적률 폐지
	변경	오정구	내동1-2	내동36번지일원	66,811.0	주택재개발	200	2단계	

※ 재정비촉진구역내 정비구역 (48개소)

-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지구별 고시내용을 따름
 - : 원미재정비촉진지구 (경기도고시 제2009-182호, 2009.5.11)
 - : 소사재정비촉진지구 (경기도고시 제2009-166호, 2009.5.1)
 - : 고강재정비촉진계획 (경기도고시 제2009-261호, 2009.6.30)

2) 정비예정구역 폐지(안)

○ 총괄표

구분		소계		주택재개발		주택재건축		도시환경정비		주거환경개선	
		개소	면적(천㎡)	개소	면적(천㎡)	개소	면적(천㎡)	개소	면적(천㎡)	개소	면적(천㎡)
폐지구역 (안)	소계	3	313	-	-	1	26	1	251	1	36
	원미구	1	26	-	-	1	26	-	-	-	-
	소사구	1	36	-	-	-	-	-	-	1	36
	오정구	1	251	-	-	-	-	1	251	-	-

- 폐지 사유 : 장기간 사업 미추진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폐지

○ 총괄조사

연번	구분	구별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기준용적률(%)	추진현황	사업방식	변경사유
폐지구역 소계 - 3개소					312,300	-	-	-	-
1	폐지	원미구	역곡1-1	역곡동 21번지 일원	25,600	200(230)	미추진	주택재건축	사업미추진
2	폐지	소사구	심곡본1-2	심곡본동 562-201번지 일원	36,200	189(213)	미추진	주거환경개선	사업미추진

연번	구분	구별	구역명	위치	면적 (㎡)	기준용적률 (%)	추진현황	사업방식	변경사유
3	폐지	오정구	삼정1-1	삼정동 223번지 일원	250,500	300(350)	미추진	도시환경정비	사업미추진

3) 개발유보구역(안)

- 대상 : 2015년 말 기준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70%를 충족하지 못하는 구역으로 향후 예상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 또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등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비율을 적용하여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반영 여부 검토.

○ 총괄표

구분	소계		주택재개발사업		주택재건축사업		도시환경정비사업		주거환경개선사업		
	개소	면적 (천㎡)	개소	면적 (천㎡)	개소	면적 (천㎡)	개소	면적 (천㎡)	개소	면적 (천㎡)	
개발유보구역(안)	소계	24	2,397	24	2,397	-	-	-	-	-	-
	원미구	11	1,079	11	1,079	-	-	-	-	-	-
	소사구	3	329	3	329	-	-	-	-	-	-
	오정구	10	989	10	989	-	-	-	-	-	-

○ 총괄조서

연번	구분	구별	구역명	위치	면적 (㎡)	사업방식	기준(%)	기타
부천시 총괄 - 24개소					2,397,628.1	-	-	-
원미구 소계 - 11개소					1,079,583.8	-	-	-
1	신규	원미구	심곡2-2	심곡동 296-7번지 일원	87,385.4	주택재개발	200	
2	신규	원미구	소사2-1	소사동 27번지 일원	51,070.8	주택재개발	200	
3	신규	원미구	소사2-2	소사동 37번지 일원	34,801.2	주택재개발	200	
4	신규	원미구	역곡2-1	역곡동 108번지 일원	104,410.7	주택재개발	200	
5	신규	원미구	역곡2-2	역곡동 408번지 일원	106,075.1	주택재개발	200	

연번	구분	구별	구역명	위 치	면적 (㎡)	사업방식	기준(%)	기 타
6	신규	원미구	역곡2-3	역곡동 71번지 일원	58,895.8	주택재개발	200	
7	신규	원미구	도당2-1	도당동 57-1번지 일원	184,040.8	주택재개발	200	
8	신규	원미구	도당2-2	도당동 69번지 일원	124,411.0	주택재개발	200	
9	신규	원미구	도당2-3	도당동 250번지 일원	67,021.9	주택재개발	200	
10	신규	원미구	약대2-1	약대동 61번지 일원	63,544.6	주택재개발	200	
11	신규	원미구	약대2-2	약대동 119번지 일원	197,926.5	주택재개발	200	
소사구 소계 - 3개소					329,040.8	-	-	-
12	신규	소사구	심곡본2-3	심곡본동 659번지 일원	141,894.4	주택재개발	200	
13	신규	소사구	심곡본2-4	심곡본동 643-1번지 일원	127,300.7	주택재개발	200	
14	신규	소사구	심곡본2-5	심곡본동 613번지 일원	59,845.7	주택재개발	196	
오정구 소계 - 10개소					989,003.5	-	-	-
15	신규	오정구	여월2-1	여월동 48번지 일원	48,641.9	주택재개발	194	
16	신규	오정구	성곡2-1	원종동 374번지 일원	75,426.2	주택재개발	200	
17	신규	오정구	성곡2-2	원종동 369번지 일원	125,298.2	주택재개발	196	
18	신규	오정구	성곡2-3	원종동 348번지 일원	124,460.7	주택재개발	195	
19	신규	오정구	원종2-1	원종동 200번지 일원	94,990.5	주택재개발	200	
20	신규	오정구	원종2-2	원종동 141번지 일원	126,233.5	주택재개발	194	
21	신규	오정구	오정2-1	오정동 562번지 일원	100,134.9	주택재개발	199	
22	신규	오정구	오정2-2	오정동 553-4번지 일원	135,671.9	주택재개발	200	
23	신규	오정구	삼정2-1	삼정동 314번지 일원	90,500.5	주택재개발	200	
24	신규	오정구	내동2-1	내동 294번지 일원	67,645.2	주택재개발	200	

나. 부문별 계획 등

- 1) 주거지 관리계획 : 주거지의 특성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거지 관리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주거지 활성화 및 바람직한 주거지 관리방안 도출
- 2) 토지이용계획 : 2020 부천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수용하고 지역 별 특성 및 입지적인 잠재력 그리고 현재의 토지이용 상황과 토지이용 의 효율성 및 주변 환경과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토지이

용계획 수립

3) 밀도 계획 : 건축물 밀도계획은 현재의 주거지 상황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여,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한 급격한 도시구조 변화를 방지하고,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

○ 건폐율 계획 :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부천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

○ 용적율 계획

- 원활한 사업추진 및 재정비촉진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 적용

- 정비예정구역별 기반시설 순 부담률은 10%이상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

- 용도지역이 혼재된 지역은 용도지역별 면적을 가중 평균한 용적률을(용도지역 용적제) 적용

4) 정비기반시설계획 : 정비기반시설계획은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가장 우선하여 검토하여 기반시설계획을 정비예정구역 내 기반시설확보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함

○ 도로계획

- 부천시 도로망과 관련된 관련 법규·지침·상위계획 등의 충분한 검토 및 분석을 거쳐 도로계획 수립하되, 상위계획에서 명시된 도로확보 계획은 우선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시 결정

○ 공원·녹지계획

- 상위계획에서 설정하고 있는 공원·녹지축과의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하도록 계획 수립하며, 공원·녹지면적은 관련법 및 지침 에서

정하는 면적이상 확보토록하며, 그 위치 및 형상은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시 결정

- 5) 교통계획 : 토지이용상황은 물론 향후 정비사업 시행 시 변경될 토지이용계획, 밀도계획, 기반시설계획 등과 연계한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 수립으로 사업시행 이후 교통여건변화를 감안하여 계획수립
- 6) 경관계획 : 부천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지형적 특성, 경관적 특성, 상업 등 다른 도시기능과의 관계 등에 따른 계획 수립으로 부천시 정체성 및 이미지 창출 도모
- 7) 환경계획 : 기존의 공원 녹지 현황 및 도시기본계획의 녹화가로축에 의한 그린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공원·녹지 계획을 수립하고, 정비구역내 생태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태면적률을 도입하여 정비계획 수립시 적용
- 8) 거주민 주거안정대책 : 임대주택공급, 주거이전비 지급 등 거주민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, 주택쿼터제 도입을 통해 주택의 철거와 신규주택의 대량공급에 따른 전·월세 및 도심공동화 문제 등 주택시장의 불균형을 해소
- 9)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 보존계획 :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이 위치해 있는 곳은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지양하며, 정비예정구역내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이 위치할 경우 공원 및 녹지 등을 계획하여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
- 10) 도심기능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방안 : 적정수준의 도심 주거기능을 유지하여 도심 활성화 증진에 기반이 되도록 함

11) 사업유형별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 : 공공부문에서는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한 주거지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며, 민간부문에서는 지나친 사업성 위주의 개발 욕구를 지양하고, 제반 법령 내에서 적절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공익의 실현을 위해 노력

다. 용적율계획 적용시기 : 용적율 계획은 2020 도시·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 수립고시 이후 적용되며, 기 수립된 정비구역의 경우, 정비 계획 변경 시 적용. 다만 기 수립된 정비구역의 정비계획 변경 시 2020 기본계획이 종전계획(2010 기본계획)에 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불리한 경우 종전계획 따른다.

3.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문	답 변
<p>○ 상한용적률 폐지 사유는?</p> <p>○ 노후 단독 및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구도심권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정비(예정)구역 지정은 개발대상 지역의 주택특성 및 주거환경 등을 감안하여 구역지정을 세분화하여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은?</p> <p>○ 기존에 지구지정된 곳도 주민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하고 찬반이 분분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음. - 따라서 법적 절차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주민공람을 거쳐 지정 한 후에도 대다수 지역주민들은 개발내용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지 못하여 개발사업 추진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. -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 전 해당지역 주민들이 개발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 공람 절차를 이행하는 방안은?</p>	<p>○ 에너지절약 시설물등의 설계를 했을시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한 방안으로 인센티브를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임.</p> <p>○ 구역지정을 세분화하고 소규모로 했을 경우에는 부동산 가치 하락과 도시기반시설의 인센티브 미흡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. 향후 2025 기본계획안 변경 수립시 검토 하겠음.</p> <p>○ 원중동의 경우에는 의견을 한 번 더 수렴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을 제안하도록 하겠음.</p>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 음

나. 반대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찬성의견

6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2020 부천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안) 의견안에 대한 의견서

의안번호	137	안건명	2020 부천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안) 의견안에 대한 의견서
제 출 자	부천시장	의 결	제170회 부천시의회 (임사회)
		연월일	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(2011. 4. 14)

2020 부천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안) 의견안에 대한 의견서

-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구도심권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쇠퇴한 도시기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과밀한 인구밀도의 해소와 기반시설의 확충, 도시기능의 활성을 도모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며,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“2020 부천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안)”에 대하여
 - 노후 단독 및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우리시 구도심권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정비(예정)구역 지정은 개발대상 지역의 주택특성·주거환경 등을 감안하여 구역지정을 세분화 지정하여 개발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검토
 - 법적 절차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(예정)구역 지정을 주민공람을 거쳐 지정한 후에도 대다수 지역주민들은 개발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지 못하여 개발사업 추진 중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, 향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(예정)구역 지정은 사업내용이 확정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 전 해당지역 주민들이 개발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고,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공람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의견으로,
- 찬성의견을 채택함

2011. 4. 14.
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